

경 고 장

소 속	예 천 군
직위(급)	군 수
성 명	김 학 동
위반 및 처분내용	

‘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공무원 복무관리 특별지침’
위반 및 소속직원 복무관리 소홀로 인한 공무원 품위손상 건과
관련하여 ‘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
규정’ 제16조 1호, 4호에 의거 경고합니다.

2020 년 5 월 7 일

처분권자 행정안전부장관



210mm×297mm [백상지(80/㎡) 또는 중질지(80/㎡)]

예천군 조사 결과 [기관장경고] 공개

◆ 2020. 4. 2. ~ 4. 3.(2일간) 행정안전부 복무감찰담당관 3명의 조사요원이 참여하여 실시한 '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공무원 복무관리 특별지침 미준수' 조사 결과 “기관장경고” 처분된 내용을 「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」 제18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.

행 정 안 전 부

기관장경고, 징계·주의 요구

제 목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공무원 복무관리 특별지침 미준수로 인한 사회적 물의야기 등

기 관 명 경상북도 예천군

징계 대상자 ① ○○○○실 지방○○○ ○○○

② ○○○ 지방○○○ ○○○

③ ○○○○과 지방○○○○○ ○○○

④ ○○○○실 지방○○○ ○○○

⑤ ○○○○실 지방○○○ ○○○

⑥ ○○○ 지방○○○○○ ○○○

징 계 종 류 ① 경징계, ② ~ ⑥ 주의

내 용

위 사람들 중 ○○○은 2018. 7. 10.부터 ○○○○실장으로, ○○○은 2019. 7. 1.부터 ○○○로, ○○○은 2019. 4. 6.부터 ○○○○과장으로, ○○○은 2020. 1. 1.부터 ○○○○실장으로, ○○○은 2020. 1. 1.부터 ○○○○실장으로, ○○○은 2018. 9. 1.부터 ○○○장으로 감사일(2020. 4. 3.)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.

「지방공무원법」 제48조, 제55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,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
특히 정부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2020. 3. 22.부터 4. 5.까지

15일간 사무실 밀집도 및 대인 접촉을 최소화하고, 대면회의·보고 및 출장은 제한하며, 생필품 구매·의료기관 방문·출퇴근 등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, 회식 및 사적인 모임·행사·약속·여행 등은 최대한 연기 또는 취소하라는 내용으로 강도 높은 '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공무원 복무관리 특별지침'을 통보하였다.

그런데 2020. 3. 24.(화) 오후 ○○○○실장 ○○○은 군수 ○○○에게 간부들 만찬모임을 제안한 후 ○○○ ○○○, ○○○○실장 ○○○, ○○○○실장 ○○○, ○○○○과장 ○○○, ○○○장 ○○○에게 만찬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여, 2020. 3. 25. 19:00부터 22:00까지 예천군 소재 음식점에서 모임을 가진 사실이 있다.

또한 위 사람들 중 ○○○, ○○○, ○○○은 1차 식사 이후 근처 치킨집으로 자리를 옮겨 익일 00:00까지 술을 마시던 중에 합석한 민간인과 ○○○○과장 간의 다툼이 지역언론에 보도되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실이 있다.

1. ○○○의 경우

위 사람은 군수생일 축하 겸 코로나19 대응으로 고생한 관련 간부들을 위로하자는 취지로 군수에게 만찬모임을 제안하였으나, 군수가 이를 고사하자 ○○○ 부임 후 한 번도 간부 만찬을 한 적이 없어 아쉬운 마음도 있다고 재차 제안하였고, 이에 대해 군수가 본인 생일은 차치하고 그동안 고생한 ○○○○과장과 ○○○장을 격려하는 자리가 되자는 취지에서 승낙했다고 진술하였다.

그러나 위 사람은 '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공무원 복무관리 특별지침' 시행으로 회식이나 사적모임 최소화 등 복무지침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만찬모임을 제안했으며, 만찬계획에 대한 최종 결정은 군수가 하였지만, 일정을 잡고, 참석자들에게 연락을 하는 등 이를 주도적으로 기획하여 모임을 하고 관련 내용이 지역언론에 보도되어 사회적 물의를 야기

한 원인제공 책임이 있다.

따라서 위 사람의 행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공직자들이 솔선하여 회식 및 사적인 모임·행사·약속·여행 등은 최대한 연기 또는 취소하라는 내용의 강도 높은 '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공무원 복무관리 특별지침'을 위반한 것에 해당되고, 「지방공무원법」 제48조, 제55조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한다.

2. ○○○, ○○○, ○○○, ○○○, ○○○의 경우

위 사람들은 예천군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단계에 접어드는데 기여한 관계자들을 위한 만찬이라고 전달받아 참석하게 된 것이고, 외부 참석자 없이 매일 아침저녁으로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하는 간부들 간 식사자리라 팬찮을 줄 알았다고 주장하였다.

그러나 위 사람들은 예천군 상황이 안정화 단계였다고 판단했을지라도 '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공무원 복무관리 특별지침' 시행 중이었고, 회식이나 사적모임 최소화 등 복무지침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만찬모임에 참석하였으며, 위 지침의 취지는 집단의 내·외부를 불문하고 회식 등 모임을 최대한 자제하라는 것이므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.

따라서 위 사람들의 행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공직자들이 솔선하여 회식 및 사적인 모임·행사·약속·여행 등은 최대한 연기 또는 취소하라는 내용의 강도 높은 '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공무원 복무관리 특별지침'을 위반한 것에 해당된다.

조치할 사항

예천군수는

1. (기관장경고) 향후 법령 및 복무지침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공무원 품위 손상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의 복무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2. 위 ○○○을 「지방공무원법」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'징계' 하시기 바랍니다.
3. 위 ○○○, ○○○, ○○○, ○○○, ○○○를 '주의' 처분하시기 바랍니다.